

의안번호	2211864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08.11.
추계번호	25C4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3 (종합병원의요건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여성건강의학과¹⁾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종합병원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여성건강의학과에 전속하는 전문의 등 인력 확보 및 충원, 인건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제3항에 따른 지원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의3 (종합병원의요건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의3에 따른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자 함

2. 상세 사유

□ 종합병원의 요건 등(안 제3조의3)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여성건강의학과를 개설하거나 이미 여성건강의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규모 및 개소 수, 정부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²⁾에 따라 ‘분만취약지’를 지정하여 현행 산부인과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신규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분만취약지 등급(3등급)에 따라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산 119억원을 배정함
 - － 참고로, 분만취약지는 60분내 분만의료이용률,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 불가능한 인구비율, 분만실별 배경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정되므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음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1] 분만취약지 지원 내용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재원
분만 산부인과	A, B등급 (신규)	◦ 시설·장비비: 10억원 ◦ 운영비: 2.5억원(6개월)	◦ 국비 50% ◦ 지방비 50%
	A, B, C등급 (계속)	◦ 운영비: 5억원	
외래·순회산부인과	신규	◦ 시설·장비비: 1억원 ◦ 운영비: 1억원(6개월)	
	계속	◦ 운영비: 2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